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효원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 79 발 의 년 월 일:2022년 08월 26일

발 의 자:이효원 의원(1명)

찬 성 자:김규남, 김원중, 문성호,

송경택, 윤영희, 이상욱, 이종배, 이종환, 이희원, 허 훈, 황유정 의원(11

명)

1. 제안이유

- 관광객, 지역주민, 관광사업자 모두가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최소 화하여 환경 훼손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삶과 균형을 이루며 지역경 제와 상생발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에 대한 지원이 요구 됨.
- 최근 지속가능한 공정관광의 새로운 트렌드로 제로 웨이스트(Zero waste, 생활 속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사회운동)여행이 각광받고 있음.
- 이에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친환경 관광을 명문화하여 그 지원 근거를 견고히 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공정관광을 위한 지원사업에 친환경 관광 홍보 및 활성화 사업을 규 정함(안 제11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관광진흥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대상사유서 별첨

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(첨부)

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6호를 같은 조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친환경 관광 홍보 및 활성화 사업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지원 사업)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 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추진할 수 있다. ① ~ ⑤ (생 략)	제11조(지원 사업)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 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추진할 수 있다.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⑥ 친환경 관광 홍보 · 마케팅 사업
<u>⑥</u> (생 략)	① (현행 제6호와 같음)